

韓國建築設計競技規準

第1章 總 則

第1条 (目的)

本規準은 建築物이나 建築과 類似한 構造物의 設計를 公開 또는 指名設計設計로 하고자 할 때 建築主, 応募者, 協力機關 및 審査委員의 責任, 權利, 任務 및 義務를 規定하여 建築主와 応募者間의 關係를 公正히 하고 競技秩序를 確立하며 建築藝術文化의 發展과 著作權의 尊嚴性을 높이는 데 그 目的이 있다.

第2条 (用語定義)

本規定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規準에서 公開設計競技라 함은 建築主가 參加資格을 特定人의 制限없이 懸賞応募케 하는 行爲를 말한다.
- ② 이 規準에서 指名設計競技라 함은 建築主가 參加資格을 特定한 法人, 自然人에게 局限시켜 施行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이 規準에서 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라 함은 大韓建築學會, 韓國建築家協會 및 大韓建築士協會에서 選出된 設計競技運用機構를 말한다.

第3条 (適用範圍)

- ① 國家機關의 建物中 特殊建物 或은 國家와 民族의 象徴的 建物은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
- ② 個人이나 團體의 建物이라도 ①項에 類似한 建物은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
- ③ ①, ②項 以外의 建物이라도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고 公認되는 建物은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

第4条 (運用 및 機關)

- ① 本規準은 前記한 設計競技가 發生하였을 경우 適用한다.
- ② 本規準은 韓國 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가 運用한다.

第5条 (當選者와 實施者)

建築主는 設計競技의 最高得点者(1等當選者)를 本設計 및 工事監理의 担当者로 指名하여야 한다.

- ① 設計競技의 當選者가 建築士法第25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建築士일 경우 建築主는 當選者를 本設計 및 工事監理者로 指名하여야 한다.
- ② 當選者가 建築士法第25條의 規定에 依한 事務所의 設計登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事務所開設登錄을 할 수 없는 처지일 경우 當選者는 建築物의 本設計 및 工事監理의 業務를 建築士法第25條의 規定에 依抛 事務所開設登錄을 한 建築士를 選定協同設計한다. 著作權은 當選者에게 歸屬된다.

第6条 (建築主)

- ① 建築主는 設計競技에 回付코져 하는 建築物의 確固不動한 計劃을 세워야 한다.
- ② 建築主는 競技計劃의 第1次 段階로 競技에 関한 모든 技術 및 行政的 諮問機構를 設定할 수 있다.
- ③ 技術 및 行政諮問을 委囑받은 建築家는 競技를 完全無缺하게 하기 위하여 競技計劃書(本規準에 付合되는 것으로 三團體 運用委員會의 承認을 獲得) 競技運營, 建築主에의 諮問, 審査, 進行, 協助等의 任務와 責任을 진다. 그러나 審査에 參加하거나 意見을 陳述할 수 없다. 以下 本條의 諮問委囑을 받은 建築家를 技術顧問이라 稱한다.
- ④ 建築主는 必히 審査委員으로 하여금 當選者를 選定케 하여야 한다. 當選者 該當이 없을 때는 最高得点者에게 當選者와 同一한 權利를 賦與하여야 한다.
- ⑤ 建築主는 応募者와 審査委員에게 同一한 內容의 事實만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⑥ 公告, 登錄, 現場說明 및 作品接受는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 規準에 一致되어야 한다.

다.

- ⑦ 当選作 以外の 優秀作品을 若干 選定 할 수 있으며 建築主는 充分的 製作費를 支払하여야 한다.

第7条 (参加制限)

建築主 및 競技計劃에 關係한 者는 競技에 參加하거나 応募者에게 協力할 수 없다.

第8条 (手数料 및 報酬)

設計 및 工事監理担当에 對하여는 大韓建築士協會의 「建築設計料率基準」에 따라 報酬를 支払한다. 指名競技參加者의 參加報酬는 1人당 當該設計報酬의 5% 以上, 公募의 경우는 當選者 또는 最高得点者에게 支払되는 手数料 總額은 設計費의 20% 以上으로 한다. 前記한 報酬나 手数料는 實施設計 및 工事監理報酬와는 無關하다. 또한 建築主는 審査決定 發表後 一定한 期間內에 建築이 實施되지 않는 境遇에 當選者 또는 最高得点者에게 充分的 報償金을 支払해야 한다.

第9条 (顧問 및 審査報酬)

技術顧問의 報酬는 勿論 要求된 일에 比例하나 技術顧問은 全的으로 많은 時間을 이에 專心하므로 充分한 報酬가 주어져야 한다. 勿論 公的인 費用은 이에 包含되지 않고 別途支払된다. 審査委員의 報酬는 旅費等 公的인 費用外에 1人당 設計費의 1% 以上으로 한다. 外國人의 境遇도 實情에 맞는 報酬 및 公的인 費用을 支払하여야 한다.

第10条 (審査費用)

審査에 要하는 諸費用은 建築主의 負擔으로 한다.

第11条 (審査委員會)

- ① 審査委員會는 三名 以上으로 構成하며 그 三分之二 以上은 設計 및 工事監理의 經驗이 豊富한 一級 建築士로서 高貴한 人格의 所有者로 한다.

但, 外國의 著名한 建築家도 招聘할 수 있다.

- ② 審査委員會는 一名의 委員長을 選出하며 委員會의 運營을 주관한다.

第12条 (審査委員에 對한 制限)

審査委員 및 審査委員과 特定한 關係가 있는 者는 審査의 公正을 害할 憂慮가 있으므로 応募하거나 応募者를 援助 或은 當該 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에도 關與할 수 없다.

第13条 (審査方法)

審査委員會는 本規準에 一致하는 自体 審査規準을 作成하여 進行할 수 있다.

第14条 (審査報告 및 發表)

審査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의 報告는 委員長이 建築主에게 通告함과 同時 委員長名義로 當選案의 決定을 公表한다.

審査에 關係된 모든 責任은 審査委員會가 지며 이에 따르는 諸費用은 建築主가 負擔한다.

第15条 (設計競技応募要領)

設計競技応募要領은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의 內規에 따른다.

第16条 (応募者의 登錄)

公募나 指名競技의 境遇 応募者는 競技 主催者에게 登錄하고 設計競技応募要領書를 交付받아야 한다.

第17条 (質疑応答)

応募者는 設計競技要領書나 応募事項에 疑問點이 있으면 技術顧問에게 書面으로 問疑할 수 있으며 이를 檢討하여 妥當性을 認定하면 이를 即時 全応募者에게 公平히 傳達하는 同時에 応募要領의 一部로 한다.

第18条 (著作權)

応募設計圖書의 著作權은 該案提出 応募者에게 歸屬한다.

但, 1等 當選案은 當該 建築物에 限하여 1回 限 關係된 使用權을 主催者에게 歸屬한다.

第19条 (応募案의 禁止事項)

応募案에는 姓名, 暗号等 어떤 種類의 標識도 할 수 없다.

第20条 (応募案의 失格)

応募案中 審査委員會가 定한 內規에 어긋나는 案을 失格시킬 수 있다.

第21条 (応募案의 公開展示)

參加된 모든 応募案은 審査 結果를 公表하기 爲하여 審査報告書와 同時에 一定 期間 一般 에게 公開展示한다.

그러나 案이 많을 때는 그 數를 制限할 수 있다.

第22条 (作品返還)

當選案을 除外한 모든 応募案은 公開展示后 二週日以內에 建築主 負擔으로 応募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